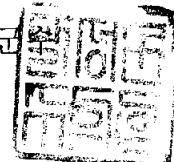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δ 27
------------	------

제출일자 : 2012. 8.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 및 우리군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 및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적용함
-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
-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함
- 라.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심의·조정 할 수 있는 후생복지제도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존 확보완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8. 7 ~ 2012. 8.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사무소(이하 “군청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달성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 ③군수는 달성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
지 시찰
6.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직원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
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
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
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달성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4인 이내(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

⑤ 위원장은 필요시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09.0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행정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5. 삭제 <2008.10.20>

③운영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